



제422회국회(임시회)
제 2 차 정 무 위 원 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등 공개 의무화〉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31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등 공개 의무화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양부남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2024. 10. 4.
3. 회 부 일: 2024. 10.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가 공공기관 중 일부를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업무의 수행 및 현행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이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라 함)하도록 하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예방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제도이므로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도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그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
이 그 조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활용도와 실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11조의2제3
항부터 제5항까지).

Ⅲ. 검토의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등 공개 의무화

☐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와 개인정보 보호수준 개선 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①·② (생략) ③ <u>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u>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보호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공개하여야 한다.</u> ④ ----- ----- ----- ----- ----- -----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⑤ ----- -----절차,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조치 결과의 공개--.

□ 현행법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업무의 수행 및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이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하여야 하며, 보호위원회는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²⁾.

○ 보호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함.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①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업무의 수행 및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이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그 외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7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의 결과를 포함하는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67조(연차보고) ① 보호위원회는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및 그 구제현황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의 결과
3.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추진현황 및 실적
4. 개인정보 관련 해외의 입법 및 정책 동향
5.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의 제정·개정 현황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시책에 관하여 공개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는 2023년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신규로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이 법적 의무사항 중심의 서면진단으로 수행되어 진단 결과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개선 권고 제도를 도입하여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시키고자 도입되었으며, 2024년 1,432개 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고 있음³⁾.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 개요(2024년 기준) >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
- 평가대상: 총 1,432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9, 소속기관 460, 지자체 243, 교육행정기관 193, 산하공공기관 327, 지방공기업 160)
- 평가결과: 기관별 S·A·B·C·D 등 5개 평가등급 부여
- 평가지표
 - (정량지표)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법령 등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자체평가(43개)
 - (정성지표)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내용의 적절성·충실성에 대한 심층평가(8개)
 - (기타지표) 가점: 신기술 활용 개인정보 안전한 처리
감점: 유출·사건 등
감경: 사고대응 등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 2024. 4.

□ 개정안은 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실효성 및 국민의

3) 2024년도 평가 추진계획: 1차 자체평가(2024. 9.~11.) → 2차 심층평가(2024. 10.~2025. 2.) → 3차 종합평가(2025. 3.~4.)

알권리를 제고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의 내용 중 첫째, 보호위원회와 평가 대상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⁴⁾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공공기관 알리오’)을 통해 공개해 왔고, ②보호위원회는 향후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공개할 계획이며, ③공공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례⁵⁾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제3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통합공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에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에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통합공시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통합공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이하 “통합공시기준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5)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에 따라 위원회는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⁶⁾⁷⁾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와 평가 대상 기관이 평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임.

□ 둘째, 개인정보 보호수준 개선 권고에 대한 조치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보다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제재를 부과하는 것과 유사하여 공공분야의 개인정보 보호·관리의 현황,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유도하려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평가대상 기관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04

6)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는 공개하고 있었으나, 2024년에 도입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는 아직 도출되지 않아 공개된 바 없음.

7) 참고로, 보호위원회는 평가대상 기관에게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4.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대민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이외에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개인정보보호 인증 취득 현황 등을 공개하는 것을 권장